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9. 19.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9. 19.

라. 상정 및 의결 :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97. 9. 27.)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직제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기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나.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4조제4항)
 - 현행 : 재무경제위원회 ⇒ 개정 : 재정경제위원회
- 부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 명칭 변경 (안 제10조제3항)
 - 현행 : 지역경제국장 ⇒ 개정 : 재정경제국장
-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 삭제 (안 제8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의결년월일	97. 9. 30. (제55회)

제출년월일:97. 9. 19.

제 출 자:부천시장

□ 제안이유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직제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기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 위원회 명칭변경 (안 제4조제4항)
 - 현행 : 재무경제위원회 ⇒ 개정 : 재정경제위원회
- 부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 명칭 변경 (안 제10조제3항)
 - 현행 : 지역경제국장 ⇒ 개정 : 재정경제국장
-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 삭제 (안 제8조제3항)
 - ※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는 가부동수가 발생할 수 없음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생략)</p> <p>④ 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u>재무경제위원회</u>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재정경제위원회</u></p>
<p>제8조(회의) ①~②(생략)</p> <p>③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p> <p>④(생략)</p>	<p>제8조(회의) ①~②(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②(생략)</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u>지역경제국장</u>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⑤(생략)</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재정경제국장</u></p> <p>④~⑤(현행과 같음)</p>